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천유원실버타운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 차 -

제1장 목적 ····· 3
제2장 입소 ····· 3
- 입소정원 ····· 3
- 모집방법 ····· 3
제3장 입소계약 ····· 3
- 입소계약 ····· 3
- 계약목적 및 대상자 ····· 3
- 계약기간 ····· 3
- 계약해제 ····· 4
- 퇴소 ····· 5
제4장 입소자 ····· 5
- 입소자의 권리 ····· 5
- 입소자의 의무 ····· 5
제5장 보호자(신원인수인) ····· 6
- 보호자의 권리 ····· 6
- 보호자의 의무 ····· 6
제6장 서비스 ····· 6
- 서비스의 내용 ····· 6
- 특별서비스의 비용 ····· 7
제7장 서비스 제공자 ····· 7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7
제8장 입소비용 ····· 8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8
- 입소비 납부 등 ····· 9
- 입소비용에 대한 변경 ····· 9
- 변경절차 ····· 10
제9장 특별보호 ····· 10
- 특별 보호서비스 기준 ····· 10
- 특별보호 비용 ····· 11
제10장 의료서비스 ····· 11
- 의료서비스 구체적인 처리절차 ····· 11
- 비용 ····· 11
제11장 시설물사용 ····· 11
- 안전사고 예방 ····· 12
- 시설물관리 ····· 12
제12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12
- 배상책임 ····· 12
- 면책범위 ····· 12
- 배상책임보험 ····· 13
- 업무상 재해 보상 ····· 13
-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13
- 업무외의 재해 ····· 13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 적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보호자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입 소

가. 입소정원 : 천유원실버타운의 입소정원은 198명이다.

나. 모집방법 : 천유원실버타운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우선 모집

②. 보호자를 통한 모집

③. 천유원실버타운 홈페이지 및 홍보지를 통한 모집

3. 입소계약

가. 입소계약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계약목적 및 대상자 :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만,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다.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

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이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시설의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라. 계약해제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ㄴ.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ㄷ. 입소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ㄹ. 입소자가 입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마. 퇴소

① 시설장은 입소자가 라.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가 라.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신청서를 천유원실버타운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천유원실버타운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입소자가 입소 중에 사망한 경우 (외박 중 사망도 포함) 시설은 조의금지급 및 근조화환을 발송할 수 있다.

4. 입소자

가. 입소자의 권리 : 요양원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천유원실버타운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관리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의무 : 시설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① 시설과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⑤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5. 보호자(신원인수인)

가. 보호자의 권리 : 보호자가 제3장 가. 입소계약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입소자의 계약, 천유원실버타운 이용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천유원실버타운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보호자의 의무 : 보호자가 제3장 가. 입소계약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입소자의 계약, 천유원실버타운 이용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③ 입소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④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⑥ 그 밖에 천유원실버타운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6. 서비스

가. 서비스의 내용

① 시설장은 입소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소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ㄱ. 신체활동지원

ㄴ. 일상생활지원

ㄷ. 정서지원

ㄹ. 인지활동지원

ㅁ. 여가활동지원

ㅂ.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ㅅ. 지역자원 연계

ㅇ. 목욕서비스

나. 특별서비스의 비용 : 입소자가 요청하여 외부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7. 서비스 제공자

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ㄱ. 종사자는 급여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특성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서비스 하도록 한다.

ㄴ. 종사자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ㄷ. 종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급여대상자가 동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ㄹ.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ㅁ.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

도록 강요 하여서는 안 된다.

ㅂ.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의료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ㅅ.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ㅇ.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ㅈ. 서비스 제공 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상황대응매뉴얼 대로 응급조치를 취한다.

8. 입소비용

가.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물가의 변동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한다.

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1, 2와 같다.

표1. 시설급여【 1일 】- 2025년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84,240	78,150	73,80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30,000원 2인실 15,000원		
	식재료비(3식)	8,400원 (2,800원×3식)		
	간식비(2회)	1,600원 (800원×2회)		
	이·미용료 등	없 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표2. 세부내역 【 30일 기준 】 - 2025년 기준

1. 2024년, 2025년 수가 내역 비교(2.1:1, 1일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식대비/간식비
2024년	84,240	78,150	73,800	8,400 / 1,600
2025년	**90,450**	**83,910**	**79,240**	**8,400 / 1,600**
차액	▲6,210	▲5,760	▲5,440	-

2. 본인부담금 변동 내역(30일 기준, 식대비/간식비(300,000원 포함)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비고
일반 (20%)	2024년	805,440	768,900	742,800	
	2025년	**842,700**	**803,460**	**775,440**	
	차액	▲37,260	▲34,560	▲32,640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비고
경감 (12%)	2024년	603,260	581,340	565,680	
	2025년	**625,620**	**602,070**	**585,260**	
	차액	▲22,360	▲20,730	▲19,580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비고
경감 (8%)	2024년	502,170	487,560	477,120	
	2025년	**517,080**	**501,380**	**490,170**	
	차액	▲14,910	▲13,820	▲13,050	

※ 단위는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과 동일(0원)

③ 제2항의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④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천유원실버타운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⑤ 장기요양등급 외 이용자의 경우 시설과 계약자의 상호 협의 하에 입소가 가능하며, 등급외자의 1일 수가는 3등급의 1일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입소비 납부 등

① 입소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비를 계산하여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한다.

③ 입소비 납부는 천유원실버타운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천유원실버타운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 입소비용에 대한 변경 :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소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입소비용을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변경절차 : 본인부담금의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부담금 변경

ㄱ.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년1회) → 입소자(보호자)상담 → 재계약

ㄴ. 수가변경에 따른 수가 인상 → 입소자(보호자)상담 → 재계약

ㄷ. 건강보험자격(본인부담율) 변경 → 입소자(보호자)상담 → 재계약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ㄱ.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입소자(보호자)고지 → 재계약

9. 특별보호

가. 특별 보호서비스 기준

① 시설장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다른 입소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ㄴ. 대체할 만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시설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실시하되, 제한사유 등을 기록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전문 의료서비스 (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특별보호 비용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상급침실 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입소자가 부담한다.

②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특별침실 사용 사유를 설명하고 추가 비용 발생 시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③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10. 의료서비스

가. 의료서비스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시설장은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장은 천유원실버타운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④ 시설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비용 : 시설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촉탁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촉탁의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11. 시설물사용

가. 안전사고 예방

①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천유원실버타운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입소자 및 천유원실버타운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천유원실버타운 내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입소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시설물관리 : 시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점검활동을 실시한다.

① 가스안전점검 : 연1회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고 월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에 가스안전 점검표를 비치한다.

② 전기안전점검 : 3년에 1회 한국전력공사에서 정기점검을 받고 주1회(월4회) 위탁업체로부터 점검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월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에 전기안전 점검표를 비치한다.

③ 소방안전점검 : 연2회 위탁 업체로부터 소방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받고, 시설 내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시설에 소방작동기능점검표, 소화 및 경보설비 점검표, 소방계획서를 비치한다.

④ 엘리베이터안전점검 : 연1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고 위탁업체로부터 월1회 이상 점검한다. 시설에는 승강기 안전점검일지를 비치한다.

12.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가. 배상책임

① 시설장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천유원실버타운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천유원실버타운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면책범위

① 제12장 가. 백상책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천유원실버타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ㄱ.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ㄴ.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ㄷ.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ㄹ.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② 보호자는 시설의 확실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소자의 건강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설은 천재지변 및 사변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해 및 사망 등의 재난에 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배상책임보험 : 시설은 영업배상 및 전문인 배상책임에 가입을 의무화하며, 재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인 배상책임 및 영업배상의 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라. 업무상 재해 보상 : 직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시설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제 보상을 행한다.

마.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보상을 받게 된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시설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바. 업무외의 재해 : 시설은 직원의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